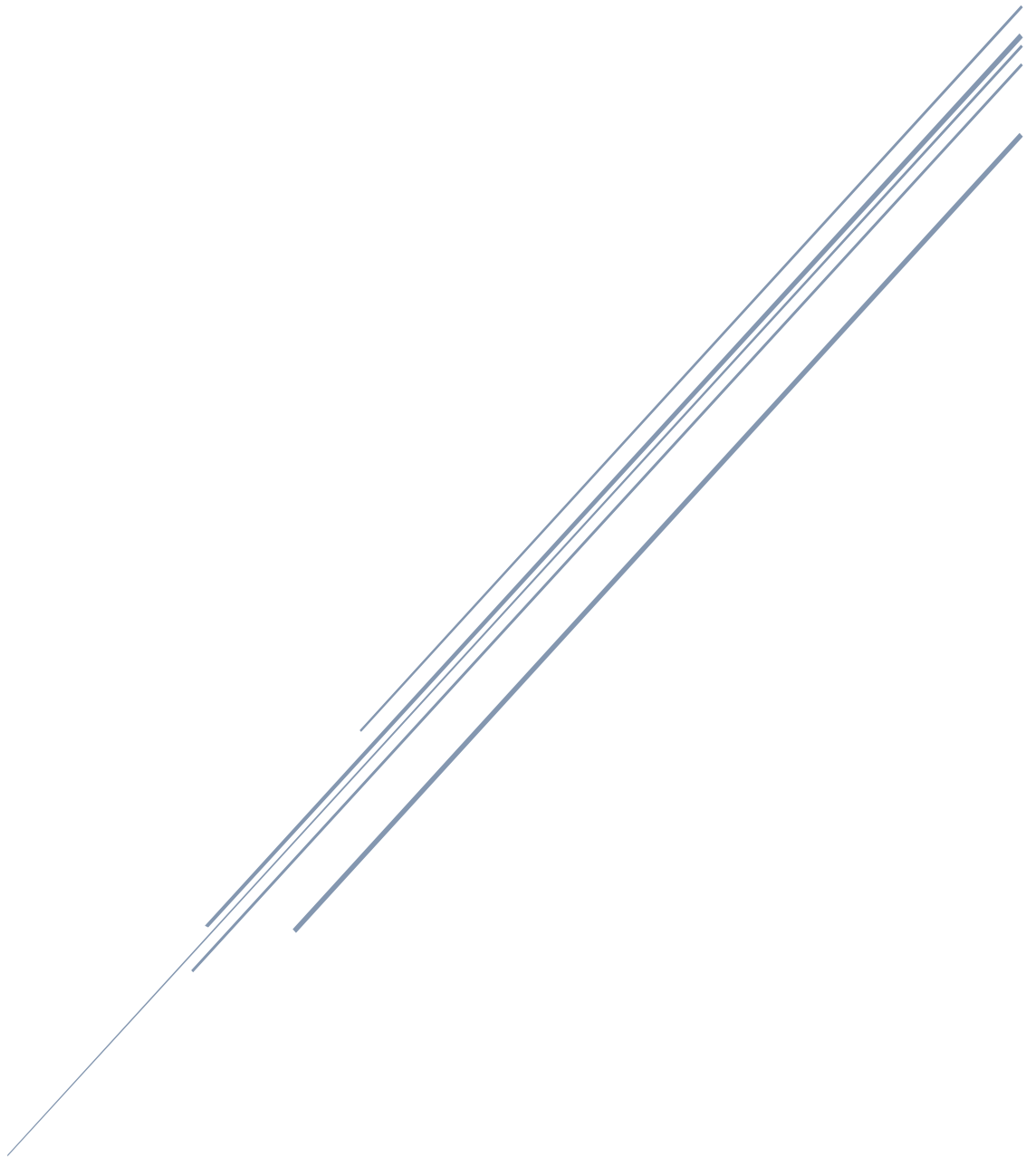


3.입소계약



1. 목적

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시설은 계약기간, 입소보증금,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, 계약자간(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) 권리·의무,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, 계약의 해제, 입소 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- 1)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2)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3)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2. 적용규정

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
3. 계약기간

- 1)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,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2)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(수가, 등급변경)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- 4)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.
- 5)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 계약할 수 있다.

4. 준수사항

- 1)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- 2)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 별도 서식인 장기요양이용약관[별첨 1]으로 제공한다.

(단, 계약서에는 기간, 급여의 종류, 급여비용, 비급여, 개인정보보호, 분쟁해결,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.)

5. 월 이용료

[표 1] 노인장기 요양기관 기본수가 (30일 기준)

1등급	2등급	3~5등급
₩ 2,527,200 원	₩ 2,344,500 원	₩ 2,214,000 원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수급자	0% 부담
	경감대상자 (60%)	8% 부담
	경감대상자 (40%)	12% 부담
	일반수급자	20% 부담

[표 2]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(30일 기준)

항목	금액			비고
	1식	1일	30일	
식비	₩ 4,000 원	₩ 12,000 원	₩ 420,000 원	
간식비		₩ 2,000 원	₩ 60,000 원	
상급병실			₩ 100,000 원	
이미용비				

6. 이용료 및 비용 변경절차

1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감경이 변경되었을 경우

⑤ 비급여 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

2) 수가 및 등급 변경으로 시설 이용료 변경 시 재계약을 작성한다.

3) 비급여 항목 및 감경 변경에 따른 이용료 변경은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없이 보호자 및 수급자와 협의한다.

7. 운영시간

1) 시설의 의무 업무일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.

2)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,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.

[표 3] 시설 영업 시간

사업실시지역	행복한 실버홈	
업무시간	수급자 서비스	24시간 서비스 제공
	수급자 상담시간	AM 09:00 ~ PM 18:00
	입소신규 상담시간	AM 09:00 ~ PM 18:00

8. 계약자간 의무와 권리

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(입소자) 및 신원인수인 간에 의무와 권리(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이용 표준약관 근거)의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8.1.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서비스제공자(시설)의 의무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

-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(단, 병·의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8.2.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

서비스이용자(입소자)의 의무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.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-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8.3.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

서비스이용자(입소자)의 권리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.

-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8.4. 신원 인수인의 의무

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8.5. 신원 인수인의 권리

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
-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-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9. 계약 해지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-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10.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- 1)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- 2)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.